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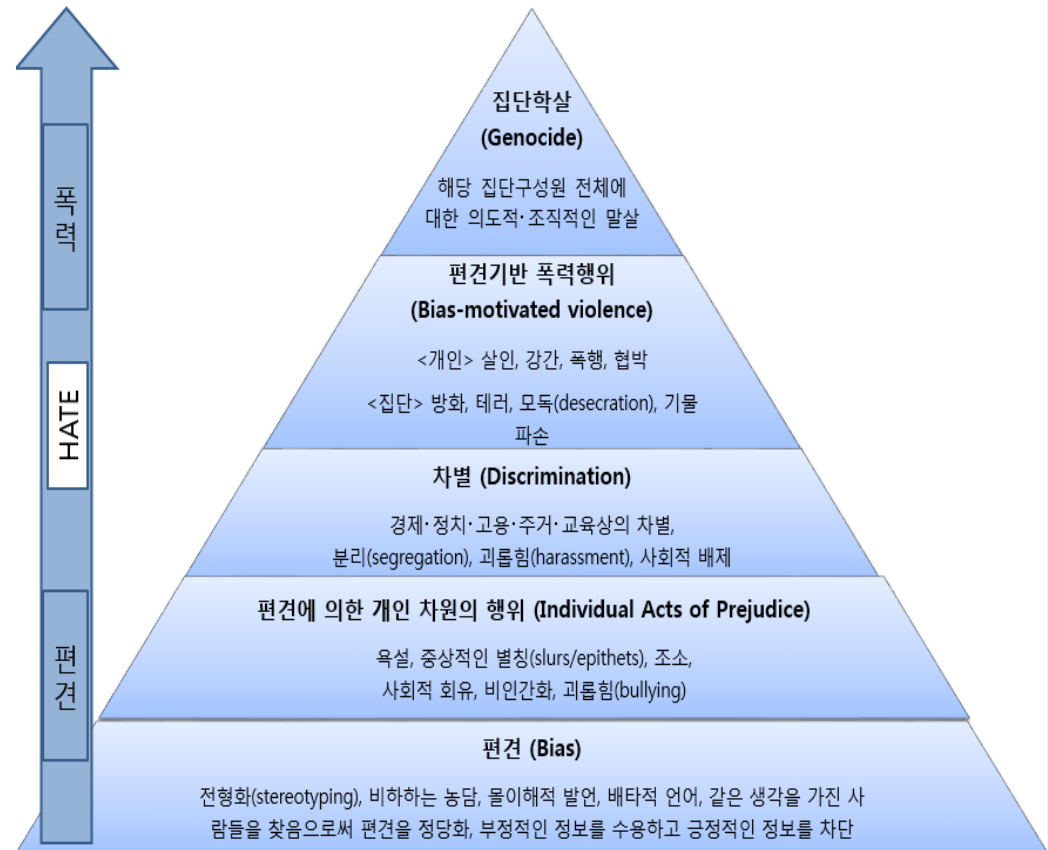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승현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혐오표현 대응의 필요성

-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인종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인 집단학살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 특정집단에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증오, 폭력의 선동이 집단학살로 이어지는 마지막 기항지일 수 있음

- 표적집단의 속성이나 그 속성을 보유한 인간 자체가 흉악하거나 더러움
- 표적집단은 아동과 같이 무지하거나, 불쌍한 동정적인 존재로서 지도나 교육이 필요함
- ‘일반적인/정상적인/올바른’ 타인들, 나아가 사회전체나 세계전체에 악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교정하는 것이 사회전체 이익이나 도덕성에 비추어 옳바름(정당화의 과정)



■ 국제법규범

➤ 「제노사이드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권고 제20호(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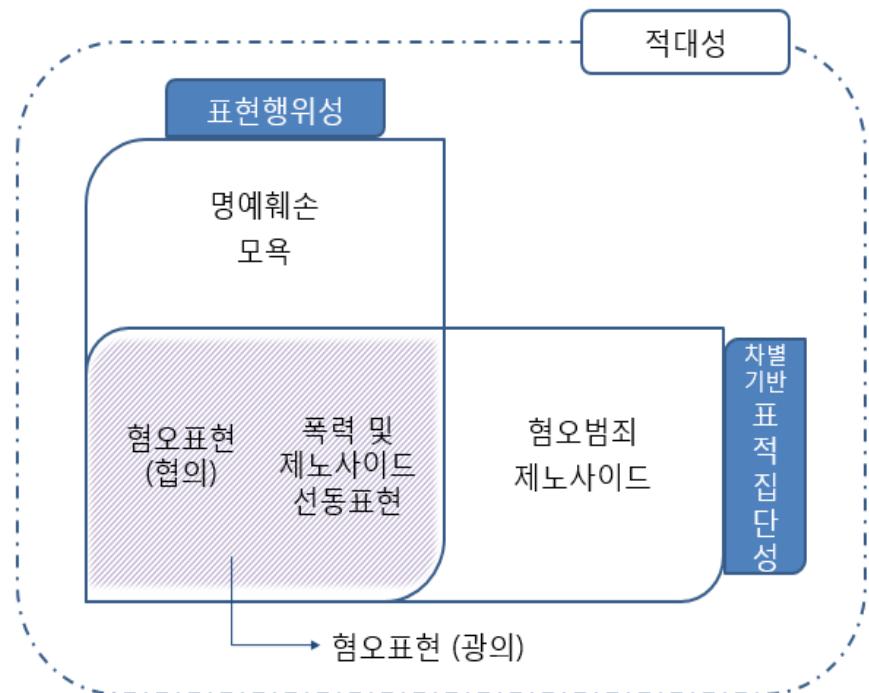
“인종적 적대감,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 그리고 불관용에 기한 적대감을 확산, 선동, 증진,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이때 불관용이란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소수자, 이주민, 이주민 출신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과 적대감으로 표현되는 불관용을 포함” ※ 호모포비아적 발언도 포함된다고 해석

혐오표현의 개념

-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
-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은 변화 불가능한 인격적 구성요소로서의 속성을 이유로 혹은 전제로 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차별대상이 아니라 해당 표적집단에게 장기간 축적되어 지배적인 관념으로 고착된 편견과 차별의식에 기인

◆ 구별해야 하는 개념

- ✓ 단순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의 표출
- ✓ 현행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표현
- ❖ 감동이, 창녀, 호모 vs 악당, 사기꾼, 위선자
- ❖ 특정개인 vs 특정 집단
- ❖ 표적형·형식적 혐오표현 - 선동형·실질적 혐오표현



- ❖ 혐오표현의 개념요소: 차별기반 표적집단성(집단적 차별성 및 차별의 역사성), 적대성, 표현행위성

■ 혐오표현의 해악성

➤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 침해

- ✓ 지속적.경험적으로 장기간의 차별을 받아온 특정집단에 행해지는 것으로써 혐오표현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지되고 있는 집단구성원들임.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공포감, 위축감, 좌절감, 내면의 자기부정을 야기함. 혐오표현이 특정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를 칭하는 경우에도 혐오표현이 가지는 표적집단성과 적대성의 요소로 인하여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공포와 위축으로 연결됨

ex. 심리적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일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도 발생.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온라인: 장애인 58.4%, 성적 소수자 57.8%, 기타여성 51.0%, 오프라인: 장애인 58.8%, 이주민 56.0%, 성적 소수자 49.3%)

홍성수 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6

➤ 공론장의 왜곡

-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외현화되는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적 환경하에 표적집단 구성원은 공적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가지게 됨 → 표적집단 구성원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
- 표적집단 구성원을 침묵시키는 한편,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몸담고 있는 공론장 전체에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만연시킴 → 공론장의 토론문화 왜곡

➤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

- ✓ 표적집단 구성원의 인격을 저해하고 공포감을 심는 것으로 인해 표적집단 구성원에게 자기부정과 자기비하가 내면화될 때 표적집단 구성원들은 차별 받는 상황을 납득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다른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화시켜 자신의 취약성과 배제의 상황을 전복시키려는 현상 발생
- ✓ 사회전체에 있어서 표적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의 확산은 표적집단 구성원이 차별의식에 노출된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함
- ✓ 혐오표현으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은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혹은 불평등 방지 및 시정을 회피하게 만듦

혐오의 특징 (Warman v. Kouba, 2006CHRT50)

- ① 표적집단이 사회의 주요조직을 지배하여 타인의 생존이나 안전등을 침해하는 강력한 적으로 묘사,
- ② 신뢰성이 높아 보이는 실화나 뉴스보도영상 등을 이용하여 표적집단을 부정적으로 일반화,
- ③ 표적집단이 어린이, 노인, 약자들을 이용한다고 묘사,
- ④ 표적집단이 오늘날 사회나 세계전체가 가진 문제의 원인으로 묘사,
- ⑤ 표적집단이 본질적으로 위험 또는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
- ⑥ 표적집단의 구성원이 무가치하고 생래적으로 사악하다는 사상을 전달하는 표현,
- ⑦ 표적집단에 의한 해악으로부터 타인을 구하기 위해 해당집단을 추방, 격리, 절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달하는 표현,
- ⑧ 표적집단을 동물, 해충, 배설물과 비교하여 비인간화 시키는 것,
- ⑨ 극단적으로 강한 적대감과 모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우 선동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 ⑩ 표적집단의 구성원이 과거에 경험한 박해나 비극을 과소화하거나 축복하는 것,
- ⑪ 표적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대응 현황

■ 영국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제17조 ('인종적 적대감(racial hatred)'의 의미)

이 장에서 '인종적 적대감'이란 피부색, 인종, 국적(시민권 포함) 또는 민족적 혹은 국가적 출신에 의해 정의되는 사람의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다.

제18조(말이나 행동의 사용 또는 글의 공개)

(1) 위협적, 매도적 혹은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사용하거나, 위협적, 욕설적, 모욕적인 글을 공개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 유죄이다

(a) 인종적 적대감을 고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거나

(b) 모든 상황상 인종적 적대감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종교 및 성적지향에 준용 (「인종과 종교 혐오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형사사법과 이민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 독일

형법 제130조 대중선동죄

① 공공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적정한 방법으로 1.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이나 일부의 인구집단 또는 거기에 속한 개인에 대하여 그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오 또는 폭력적이거나 자의적인 조치를 선동하는 경우, 또는 2. 전술한 집단이나 일부의 인구집단 또는 개인을 그에 속한다는 이유로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 또는 중상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3월 내지 5년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1. 전술한 특정 집단, 인구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폭력적이거나 자의적인 조치를 선동하는 경우 또는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 또는 중상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로 이를 글(제11조 제3항)을 통하여 (a) 배포, (b) 공공에 공개, 게시, 표명 기타 접근가능하게 하거나 (c) 18세 이하에게 제공, 공급 또는 접근가능하게 하거나 (d) (a)에서 (c) 까지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수입·수출하기 위해 생산, 입수, 공급, 저장, 제공, 발표, 추천, 수행한 경우, 2. 라디오, 미디어, 통신서비스를 통해 1에 제시한 내용의 것을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 공공의 평화를 혼란하게 한 방법으로서, 국제형법전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공연히 혹은 집회로 이를 용인하거나,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자는 5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국가사회주의의 전단적 폭력을 승인하거나, 찬미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혹은 집회로 공공의 평화를 혼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에 처한다.

■ 프랑스

언론법

제24조

- ⑤ 제23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해서,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는지 유무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는 자는 45,000유로의 벌금이나 1년의 구금, 또는 양자의 어느 하나에 처한다.
- ⑥ 전술한 수단에 의해서, 성,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해 형법 제225-2조와 제432-7조에 규정한 차별을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제32조

- ① 제23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2,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동일한 수단에 의해서,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는지 유무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1년의 구금과 45,000유로의 벌금, 혹은 양자의 어느 하나에 처한다.
- ③ 성,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33조

- ③ 전항에 규정된 조건하에, 민족, 국가, 인종, 종교에 속한 유무를 이유로 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모욕이 행해진 때에는 6월의 구금과 22,500유로 벌금에 처한다.
- ④ 성,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행해진 모욕에 대해서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절(비공연한 인종주의적 혹은 차별적 명예훼손 및 모욕)

R624-3

- ①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성, 성적지향,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행하는 비공연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R624-4

- ①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모욕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성, 성적지향,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행하는 비공연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R625-7

- ①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을 이유로 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한 차별, 적대감 또는 폭행을 비공연하게 선동하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 ② 성, 성적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증오 또는 폭행을 비공연하게 선동하거나 제225-2조와 제432-7조에 규정한 차별을 비공연하게 선동하는 행위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 이 장의 제목은 Hate Propaganda 임

제318조(제노사이드 옹호(Advocating genocide))

(4) 이 조에서 '식별가능한 집단'이란 모든 공공부문에서 피부색, 인종, 종교, 민족적 출신 또는 성적지향에 의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319조(공공에서의 적대감의 선동(Public incitement of hatred))

(1) 공공장소에서 표현의 전달에 의해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선동한 자는, 그 선동이 치안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a) 기소가능한 범죄로서 유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 (b) 약식판결에 기해 처벌가능한 죄로서 유죄이다.

(2) (고의에 의한 적대감의 증진) 사적인 대화를 제외하고, 표현의 전달에 의해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고의로 증진하는 자는,

- (a) 기소가능한 범죄로서 유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 (b) 약식판결에 기해 처벌가능한 죄로서 유죄이다.

(3) 누구도 이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전달되는 표현이 진실인 것을 증명한 때
- (b) 선의로 종교적 주제 혹은 경전상 믿음에 기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논의를 통해 규명하려고 시도한 때
- (c) 표현이, 그에 대한 논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사에 관련된 주제에 관한 것이었을 경우 또는 피고인이 그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 (d) 캐나다의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한 적대감의 감점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의로 이를 지적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Cf. 일본

「혐오표현 해소법」 (「본방외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本邦 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2조(정의)

“본방외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본방외출신자에 대해 차별적 의식을 조장 또는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혹은 재산에 위해를 가하고자 함을 고지하거나 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함

제3조(기본이념)

“본방외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노력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는 지자체에 대해 “본방외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언 및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음. 지자체는 국가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당해 지역의 사정에 대응한 시책 강구에 노력할 것

5조-7조는 기본적 시책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상담체계 정비, 교육, 계발활동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방외출신자’: ‘본방의 역외에 있는 국가 혹은 지역 출신자 또는 그 자손로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

- ‘부당한 차별적 언동’: 법무부의 혐오표현 실태조사(공익재단법인 인권교육개발추진센터 위탁용역)에서의 분류를 참고하여 다음을 들고 있음. 1. 특정 민족이나 국적에 속해있는 집단을 일률적으로 배척하는 것(‘○○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2. 특정 민족이나 국적에 속해있는 집단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것(‘○○인을 모두 죽여라’), 3. 특정 민족이나 국적에 속해있는 집단을 멸칭으로 부르는 등 비방증상하는 것(바퀴벌레 ○○인’)

- 인터넷상 이루어진 표현에 대해서도 적용됨

	사건명	문제된 표현행위
미국	Skokie사건	미국국가사회주의단체가 유대인 마을에 나치군복을 입고 스와티카를 들고 행진하는 행위
	R.A.V. v. City of St.Paul	흑인가족의 집 정원 담에 십자가를 태우며 KKK교리를 낭독
	Virginia v. Black	야간에 십자가소각을 포함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에 대한 모멸적 발언을 하는 등의 KKK집회; KKK구성원이 2인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집 정원에서 십자가 소각을 시도한 사건
	Snyder v. Phelps	동성애자 군인의 장례식장 길목에서 피켓으로 “매튜는 지옥에 떨어졌다”, “호모(fag) 군대” “신이 너를 미워한다” “미이 망한다”
캐나다	R. v. Keegstra	고등학교 교사가 역사수업에서 유대인을 묘사하며 “기만적, 불온한, 가학적, 돈을 좋아하는, 권력에 굶주린, 유아살해자”라고 칭하고 유대인이 기독교 붕괴를 계획하고, 불황이나 전쟁을 일으키며 홀로코스트체험담을 날조한다고 주장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백인우월주의를 표방하는 Western Guard Party와 그 대표 Taylor가 유대인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내용을 윗하여 유대인 및 유대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담아 전화로 유포
	Whatcott v. Saskatchewan	공립학교나 대학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하고 동성애가 최악이며 교정되어야 한다. 내용을 담은 전단지 유포
독일	Auschwitz Lie	국가민주당 기관지에 ‘정치적 공갈에 떠는 독일의 장래’라는 제목의 강연회를 공지하며 그 내용에 유대인 홀로코스트 날조된 사실이라는 취지를 담음
유럽인권법원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National Youth라는 단체는 중학교 학생사물함 안 혹은 앞에 동성애자에 대해 공격적인 100여장의 리플렛을 배부. 리플은 동성애가 “일탈적 성적 성향”이라는 주장, “사회 주요한 곳에 도덕적으로 파괴적인 효과”를 미치며, HIV/AIDS 발달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음
	Norwood v. the UK	불길에 싸인 Twin Tower와 함께 “Islam out of Britain-Protect the British People”이라고 적힌 British National Party의 포스터 창문에 붙임
	Féret v. Belgium	벨기에 MP이자 FN-NF 정당 의장인 Daniel Féret은 선거운동 중 "벨기에의 이슬람화에 저항하라", "영터리 통합정책을 추라", "비유럽인 구직자를 돌려보내라"등 리플렛을 배포
일본	교토조선학교 사건	재특회 및 우익단체 회원들이 교토조선학교 주변에서 시위 ‘북한의 스파이양성기관,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 쫓아라’ ‘전쟁 중 남자가 없을 때 여자 강간하고 학살해서 뺏은 게 이 땅’,
	정치인의 삼국인 발언사건	이시하라 도지사가 육상자위대기념행사에서 ‘불법입국한 삼국인, 외국인들에 의해 매우 흉악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 있다. 도쿄의 범죄는 이미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라고 발언

➤ **유엔더반 선언(Durban Declaration, 2001)**

- ✓ 인종주의, 인종차별, 혐오표현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a), 인종적 우월성, 인종적 적대감과 차별의 정당화의 사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항(c),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포함하여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같이 이들을 전형화하는 것이 공중에 확산되지 않도록(e) 사적 영역의 주체들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

➤ **제19조(Article 19)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캠퍼 원칙(2009)**

➤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의 Rabat행동계획(2011)**

- ✓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 민사, 행정규제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 형사규제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한 정당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며 최후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 ✓ 45개국 51개 시민단체가 핫라인을 통해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다. 이 단체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정보는 아동포르노, 아동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감정적 신뢰를 주기 위한 고의적 우호행위(grooming), 혐오표현('국적, 인종, 성적지향과 같은 특정 특성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폄하하는 표현')

➤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2016.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글로벌 IT기업)**

- ✓ 불법적 혐오표현을 검토하고 이를 삭제·차단을 위한 조치를 각 사의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것, 신속하고 유효한 조치를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여 해당 표현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삭제·차단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불법적 혐오표현에 관한 이용자들의 교육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대항언론을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각국 정부 및 보안담당자와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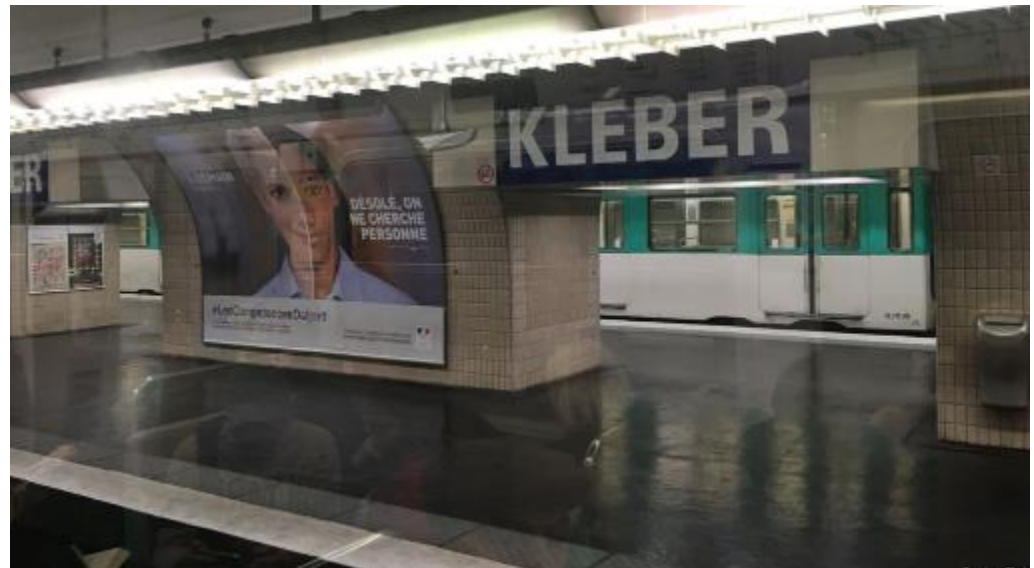
➤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

-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등의 혐오표현 대항 역할에 대한 15차례의 권고
- ✓ 인종주의와 관련된 주요한 권고들

① 인종주의에 대한 모든 대항은 언제나 평등과 보편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간 경쟁(victim competition)의 요소를 배제하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동시에 각 인종차별 사례에 따른 주의와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 ② 학교에서의 토론을 권장한다. 인종차별 문제를 터부시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구성원이 현 사회 이슈에 관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③ 세속주의(laïcité)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세속주의 헌장(Charter of Secularism)에 동 헌장의 본래 목적이 강조하는 종교 다양성을 비롯한 각종 다양성 및 양심의 자유, 개인의 고유성 및 개성에 대한 포괄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④ 동 위원회가 2015년 2월 15일 발표한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항하기 위한 의견’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주요 권고 내용은 디지털 교육과 시민성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채택이다. ⑤ 신분 증명에 있어서 인종에 기반한 정보수집은 개인 신분조회(personal certificate of verification)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동 위원회의 입장임을 밝힌다 ⑥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남용에 관한 위반 사항은 「언론법」에 의거하여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권고한다. ⑦ 경찰 당국은 인종차별 또는 반유대인적 성향을 지닌 행동 및 협박의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training)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권고 (CNCDH, REPORT ON THE PREVENTION OF RACISM, ANTI-SEMITISM AND XENOPHOBIA, 2015.)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에 대항하는 신 국가행동계획 (new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Racism and Anti-Semitism 2015-2017)’

- ①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대항하는 국가 전영역의 동원, ②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③ 혐오표현을 통한 선동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 ④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 교육



➤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 표현의 자유 가이드라인

- ✓ 폭력과 차별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제시 (ex. 타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피부색, 성적지향, 종교에 기한 적의를 증진하는 경우)
- ✓ 직장, 서비스와 용역 제공, 교육, 선거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언론, 공공기관, 규제기관, 서비스제공자, 교육현장, 선거 관련 행위로 나누어서 각각 일정한 가이드 제공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for Stop Hate UK, which is part of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age is titled "Reporting race hate crime" and is categorized under "ADVICE AND GUIDANC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Home", "Report Hate Crime", "Resources", "About Us", "Events", and "Fundraising". A secondary navigation bar includes "Home", "Advice and guidance", "Our work", "Our legal action", "Human Rights", "Equality Act", and "About us". The page content includes a "What is on this page?" section with links to "Working in the UK" and "Where to report hate crime", and a "Who is this page for?" section with links to "individuals" and "employers". The "About Us" section features a hand graphic with the text "Hands up for not living in fear" and "STOP HATE CRIME". The text describes the organization's history, starting in 1995 as a service for victims of racial harassment, and its mission to support victims and raise awareness. A quote from the Stephen Lawrence Inquiry is also included: "That all possible steps should be taken by Police Services at local level in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 and other agencies and local communities to encourage the reporting of". The page also has a "DONATE TO STOP HATE UK" button and a "Select Language" dropdown menu.

국내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및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와 명예훼손죄(제307조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명예훼손, 제44조의 7 불법정보, 제44조 임시조치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심의기준에 제10조의2

▶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KISO 정책규정 제21조

▶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정하는 비방/비하/욕설 게시물의 대표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한 욕설 또는 저속한 표현 및 생명 경시성 게시글로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 공포심이나 불안감,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 타인의 신체, 외모, 취향 등에 대해 경멸의 의미를 담아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
- 특정 계층, 지역, 국민, 종교를 근거 없이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
-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근거 없이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표 1> 차별·비하 심의통계(시정요구별)

(단위: 건)

구분	심의	시정요구				합계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	접속차단	
2013	752	575	20	0	27	622
2014	861	551	2	0	170	723
2015	1,184	856	5	5	25	891
2016.7	1,766	1,336	1	7	15	1,359
합계	4,563	3,318	28	12	237	3,595

- ※ 1. 위원회 공식 통계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의결보류건의 중복 집계 등).
- 2. '이용정지'는 주로 인터넷방송 B에 대해 결정된 시정요구임.
- 3. '이용해지'는 주로 댓글 작성자(작성댓글 9,000여개가 100% 지역비하성 댓글 등)나 블로그(장애인비하 목적의 블로그 등)에 대해 결정된 시정요구임.

<표 2> 유해정보 심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심의	1,175	1,442	3,249
시정요구	713	1,004	2,332

<표 3> 전체 시정요구 현황

구분	심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		해당 없음	각하 등
		총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결정	결정취소		
2013년	110,714	22,986 (20.8)	16,914 (15.3)	62,658 (56.6)	1,842 (1.6)	104,400 (94.3)	376 (0.3)	-	5,615 (5.1)	323 (0.3)
2014년	140,421	24,581 (18.5)	10,031 (7.5)	97,095 (73.1)	1,177 (0.9)	132,884 (100)	274	14	7,096	153
2015년	158,073	27,650 (18.6)	9,821 (6.6)	111,008 (74.6)	272 (0.2)	148,751 (100)	145	3	8,825	34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20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방송통신심의 연감,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방송통신심의 연감, 2016.

조소영 외,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6

국내 입법동향

법률안	내용
<p>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2013.6.20.)</p>	<p>제311조의2(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 제308조, 제311조 및 제311조의2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3.6.18.)</p>	<p>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p> <p>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p>
<p>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대표발의, 2015.6.9.)</p>	<p>제110조의2(지역 등 비하 언동 금지) 누구든지 정당(정당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가족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 그 밖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역 사람을 비하 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p> <p>3. 제110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역 사람을 비하·모욕한 자</p>
<p>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3.11.29.)</p>	<p>제5조의13(혐오범죄의 가중처벌) 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법안	규제대상표현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원희룡의원 대표발의, 2005.8.12.)	일제강점하 민족차별행위 옹호 및 애국지사·강제동원된 피해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013.6.3.)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6.3.)	국가유공자 명예훼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6.3.)	5.18 민주유공자 명예훼손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2013.5.27.)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14.8.14.)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친일반민족행위 찬양·정당화, 독립운동·항일운동 비방 등 역사적 사실 왜곡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16.7.20.)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2016.6.14.)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2016.6.1.)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 및 한계점

■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헌법적 요청

- 혐오표현이 해악의 효과로서 차별의 내면화, 일상의 차별 및 제도적 차별은 상호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나타나며, 모든 층위에서 표적집단에 대한 평등의 실현을 방해함
- 혐오표현의 해악성은 표적집단 구성원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리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 하에서 국가로 하여금 이를 억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정당성이 인정됨

■ 법적 규제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

■ 법적 규제의 한계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 요청: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내용규제로서 엄격한 합헌성 심사가 요구됨
- 한국의 경우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이미 상당수 존재하고,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가 문제되고 있음
-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 혐오표현 억제의 효과가 있는가
-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표현과 구분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혐오표현의 유형·전달매체·성질·발화자의 지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 ❖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정책적 선결조건으로서 규제주체인 국가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인식교육 및 국가기관과 공무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토양인 표적집단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대응이 요청됨